

의안번호	제 38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허창원, 전원표, 연철흠,
송미애, 이옥규, 정상교,

1. 개정이유

- 청소년 및 노약자 등 시민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피복비 및 순찰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범위 추가(안 제4조)
 -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추가
 -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가
- 중복되는 조항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민간협력공동체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19. 12. 23. ~ 2020. 1.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방법대의 지역 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2. 범죄예방캠페인 등 공익사업 3. 자율방법대원 교육사업 	<p>제3조(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